

신문윤리 50년

제5장

민주화시대의 신문윤리 활동



50th Anniversary

제1절

언론탄압과 언론자유 수호

1. 신군부의 언론탄압 자행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국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반유신독재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은 날로 거세졌으며 이를 막으려는 유신정권의 탄압도 더욱 강도가 높아만 갔다. 재야인사들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였고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는 재야와 연대하여 언론자유 보장과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유신반대 데모를 벌이는 가운데 YH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되었다. 이런 가운데 1979년 9월 8일 서울 민사지법이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정지처분 결정을 내리자 김영삼 총재는 박 정권 타도를 선언했고, 10월 4일 국회에서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을 변칙 처리하였다. 이에 분노한 부산, 마산지역 학생들은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격렬한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인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18년간의 기나긴 독재정권과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1979년 12월 8일자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개헌 논의에 대한 금지가 풀렸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억눌렸던 민주화 요구들이 분출했다. 언론에서도 개헌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7명의 동아투위 위원들도 석방됐다.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단체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 차제에 언론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구

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80년에 들어서면서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5·17 이전까지 각 언론사 기자들은 계엄과 언론검열에 반대하며 언론자유를 확립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1980년 5월 8일 국장단을 포함한 100여 명의 경향신문 기자들은 총회를 열고 계엄사의 검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이틀 후인 10일에 계엄해제, 언론검열 철폐, 기관원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경향신문 기자들은 1980년 계엄 이후 처음으로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을 공백으로 두고 신문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의 이 같은 반발은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정권 찬탈의 마개를 드러내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신군부는 언론검열 철폐투쟁에 기자들을 결집해 나가던 기자협회 간부들을 연행했으며 기자협회보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런 탄압정국 하에서도 언론계는 포기하지 않고 검열 거부운동에 이어 각 신문사를 중심으로 제작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5·17 광주학살에 대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왜곡·축소보도가 계속되자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 거부에 나섰다.

이러한 언론계의 반발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신군부는 힘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은밀하게 정권탈취계획을 진행시켰다. 1980년 5월 31일 초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 추대된 전두환은 이어 8월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언론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언론탄압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추진하였다.

2.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장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언론통폐합은 1980년 7월 31일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를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문공부에서 사회정화를 위해 주간·월간·계간지 등 정기간행물 172개의 등록

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던 것이다.

계엄령 하에서 결정된 이들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에 대해 문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각종 비위, 부정 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간행물과 음란, 저속, 외설적이거나 범죄 및 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등록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해온 간행물 등 발행목적에 위반했거나 법정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간행물 등도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문·방송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경영능력이 부족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일간 신문사가 발행하던 주간지와 월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정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현황(1980. 7. 31) ● 등록이 취소

된 간행물은 주간 15개(주간국제, 주간부산 등 포함), 월간 104개(월간중앙, 전일그라프, 동화그라프, 뿌리 깊은 나무, 기자협회보 등), 격월간 13, 계간 16(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경기화보, 강원화보, 저널리즘 등), 연간 24개(주로 연감류) 등이었다. 등록 취소된 간행물의 전체 비율은 유가지 120개(전체 유가지 456개의 5.3%), 무가지 52개(전체 무가지 987개의 5.3%)이며 등록 취소된 간행물은 일간 신문과 통신을 제외한 전체 등록 정기간행물 1,434개의 12%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당시의 사회정화캠페인과 함께 취해진 조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소된 간행물 가운데는 재정적 기반이 부실한 사이비언론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5·16 직후의 신문사 정비와는 양상이 전혀 달랐다. 이에 따라 언론계에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통폐합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언론계의 이러한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통폐합은 1980년 11월 14일 언론계 구조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었다. 실제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이튿날인 15일에는 언론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까지 발표했다. 7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은 민족의 자주 독립, 민족문화의 향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자체적인 수술을 단행할 뜻을 비치고 있다.

공익을 우선하여 근대적 공론 기관으로서의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을 명시한 1항에서는 상업 방송의 폐지를 결의했다. 2항에서는 신문, 방송, 통신사의 난립을 우려하며 언론 기업의 발전과 체질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인의 언론 독점화에 대한 문제, 주재 기자의 철폐, 통신사 설립, 1981년 1월을 기해 지면을 증면할 것을 밝히고 마지막 항에서는 한국 언론의 윤리성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윤리 심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언론통폐합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지의 경우 신아일보를 경향신문에 흡수시켰으며, 경향신문을 MBC와 분리했다. 또한 지방지는 1도 1사를 원칙으로 종전의 지방신문을 통폐합했으며 통신사의 경우 기존의 6개 통신사를 폐지하고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출자하여 단일의 연합통신을 설립했다.

방송의 통폐합은 신문의 그것보다 훨씬 대폭적이었다. KBS를 한국방송공사로 개편하면서 동양방송(TBC)을 흡수했으며, 동아방송(DBS) 또한 KBS로 편입시켰다. 기독교방송(CBS)은 보도 기능을 잃고 복음방송만을 전담케 되었다.

언론통폐합과 함께 대대적인 언론인 해직이 단행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비협조적인 언론인을 제거한 것이었다. 해직언론인 가운데는 계엄, 검열 거부운동을 주도했던 기자협회 간부 전원과 기협 각 분회 간부들, 각 언론사의 언론자율결의문 초안 작성자,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편집국 간부, 논설주간 등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 등이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낸 문제 언론인 명단을 토대로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추가하여 해직을 단행한 것이었다.

1980년 해직언론인 현황 ● 중앙지의 각 사별 해직언론인은 717명으로 동아일보-동아방송 34명, 중앙일보-중앙방송 30명, 서울신문 18명, 조선일보 14명, 신아일보 36명, 합동통신 14명, 동양통신 8명, 기독교 방송 16명, 현대경제 33명, 매일경제 6명, 내외경제 14명, 시사통신 11명, 경제통신 9명, 산업통신 10명, 무역통신 4명 등이었다. 해직언론인을 직급별로 보면 사장 등 임원이 24명, 주필-논설위원 24명, 편집-보도국장, 부국장 41명, 부 차장급 153명, 평기자 480명 등이었다.

3.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언론계의 반발

언론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을 통한 언론 구조개편에 이어 1980년대 언론의 위상을 규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언론기본법의 제정이었다. 언론기본법 제정에 앞서 1980년 10월 22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5공화국의 새 헌법이 10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새 헌법은 언론의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즉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 동조 2항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정부수립 후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피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명시된 것은 5공 헌법이 처음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언론기본법도 언론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5공 초기부터 그 개폐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980년 12월

26일에 제정되어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된 언론기본법은 그 이전에 시행되던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3. 12. 12) ‘방송법’(1963. 12. 16)을 통합한 것이었다. 1964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던 ‘언론윤리위원회법’(1964. 8. 5)은 언론기본법 제정과 함께 폐기되었다.

전문 7장 5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으로 이루어진 언론기본법은 정보청구권과 취재원 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부여했으나 언론 표현물에 대한 압수규정을 강화하는 등 언론의 책임에 대한 규정 등이 언론탄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정기간행물이 발행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폭력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는 일을 반복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언론인에게 진실보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했다.

언론기본법 시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법정 언론단체가 생겼고, 언론기본법과는 별도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1980. 12. 31)을 제정, 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강조했고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했던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의 언론환경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기본법은 형식적으로 공익언론을 위한 특징적인 법조문도 마련하고 있었지만, 제24조는 문공부 장관이 신문, 통신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언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언론기본법은 1980년대의 우리나라 언론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언론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제유지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감시기능과 비판기능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의 명분 아래 체제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시행 직후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민한당은 1981년 12월 언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1982년 11월 새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 문공위원회는 민한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심사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984년 7월 1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로 이안을 부결시켰다. 1985년 11월에는 신민당 의원 102명 전원의 이름으로 언론기본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편집인협회도 세미나를 통해 이 법 해석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1985년 8월에는 편협 언론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언론기본법에 의해 일간지가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제재를 받은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잡지에 대한 2건의 등록취소 사건과 1건의 정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1986년 4월 18일 한국일보 기자들의 '우리의 결의'를 시작으로 6월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중앙지 6개사 및 1개 통신사, 그리고 지방지 3개사 등 모두 10개 언론사 일선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결의하며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4. 민주화 바람과 언론자유 수호결의

언론기본법 폐지를 통해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언론계의 노력은 철권통치 하에서도 불어오기 시작한 민주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85년 2월에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1야당으로 부상, 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언론계에도 언론 활성화의 논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86년 4월부터 6월에 이르는 사이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결의하고 언론에 대한 외부의 간섭배제, 언론기본법 폐지, 언론인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들의 언론자유회복선언은 이듬해인 1987년 6·29 선언을 전후해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6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된 KBS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신민당도 KBS가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보

도를 일삼아 왔다는 이유로 이 운동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운동은 재야단체의 조직적인 지원과 시청자의 호응에 따라 KBS 자체 재정을 격감시켰을 뿐 아니라 크게는 5공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전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언론기본법 개폐에 관한 논의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편집인협회가 1986년 8월 21일 언론관계법연구위원회를 열어 언론기본법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내기로 하였고, 11월 13일에는 신민당이 소속의원 102명 전원의 이름으로 언론기본법 폐기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12월 11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의 하나로 언론기본법 토론회를 열고 "이 법은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훈클럽은 1987년 4월 10일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그리고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언론기본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1987년 4월 24일에는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신문협회를 비롯한 방송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4단체가 모여 언론활성화를 위해 언론활성화협의회를 구성했다. 언론기본법의 개정, 프레스카드 발행제의 개선, 주재기자 부활문제 등을 포함, 우리 언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언론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4개 언론단체에서 추천한 9명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구의 명칭을 '언론활성화협의회'로 결정하고 회장에 최재욱 경향신문 사장을 선출했으며 간사에 김진찬 신문협회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논의해 나갈 의제의 선정, 학계와 법조계 인사의 참여문제 및 협의회의 운영문제 등도 논의했다. 언론활성화협의회의 각 단체대표는 다음과 같다.

언론활성화협의회 단체대표 명단

- △신문협회=최재욱(경향신문 사장)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강표원(강원일보 사장)
- △방송협회=배학철(KBS 보도본부장) 이은명(MBC 보도이사)
- △편집인협회=금창태(중앙일보 편집국장대리) 인보길(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기자협회=정구운(연합통신 사회부 차장) 이규진(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협의회는 6·29 당일에도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행정상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법을 제정, 이를 수용한다는 최종안을 마련,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문화공보부가 발행하는 프레스카드제도의 폐지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신문 증면과 주재기자 부활의 필요성도 인정, 이에 대해서는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정부가 당시 검토하고 있던 언론활성화의 방안은 인쇄매체의 경우 순수한 등록제가 아닌 사전에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등록제 실시였다. 아울러 등록취소권은 현행대로 행정부가 갖되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홍보정책실의 폐지를 비롯한 문공부 기구의 개편, 언론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에 포괄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살려나가는 방안, 재벌 그룹의 언론참여를 막기 위한 경영금지 등 필요조항의 검토,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이용희 문공부 장관은 7월 14일 언론기본법 문제와 관련, “인쇄매체의 경우 절차법 성격의 대체입법, 전자매체의 경우는 방송 관리적 차원의 대체입법을 통해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언론기본법 폐지 및 대체입법 문제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내 국회의 입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재기자 부활 및 신문 증면, 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고 “다만 주재기자 부활에 있어서는 지난 날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문협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 문제는 지금과 같이 문공부가 발행하던 것을 폐지하고 신문협회·방송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 언론자유 위축 하에 심의활동 전개

언론기본법 시행으로 언론계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문윤리위원회는 윤리위 본연의 임무인 심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에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980년 9월 24일 윤리위는 제527차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 2151호를 의결하였다. 경남매일 8월 20일자에 게재된 ‘20대 괴한 2명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비공개경고를 내렸고 2152호인 부산일보 9월 11~12일자 연재소설 ‘안개 속에 지다’는 공개경고를 결정하였다. 신문광고 심의에도 많은 공을 들여 전남일보 9월 4, 8, 12일자에 실린 운명철학 광고와 전남매일 9월 1, 2일자에 게재된 영적 예언계의 거성 광고에 주의 결정했으며 동아일보 9월 9일자 서적광고 대별과 조선일보 9월 10일자 대별 광고 역시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 ▲ 1981년 6월 24일 열린 제535차 회의에서는 중앙일보 5월 26일자 ‘우수한 화술...’ 제하의 기사와 강원일보 6월 12일자 ‘10호 이상...’ 제하의 기사에 주의 결정하였다. 충남일보 5월 30일자 ‘동거애인의...’ 제하의 기사와 연합통신 6월 11일자 ‘금품탈취 후...’ 제하의 기사에는 각각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또 중앙일보 6월 9일자 ‘5명의 도망자들...’ 관련 기사를 비롯해 한국일보 6월 9일자 ‘내연의 처’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6월 10일자 ‘밀고자 복수 위해...’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동일자 ‘호텔로 여관으로...’ 제하의 기사



제2절

민주화시대의 개막

1. 언론노조의 탄생

언론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신문윤리위에서 심의활동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경직되었던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3저 호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사상 최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1986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민주화에 대한 염원으로 승화되어 갔다.

1987년 벽두인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사망한, 소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였다. 당국의 은폐 기도가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전국에서는 박종철 군을 애도하는 물결이 번져나갔다. 이런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기존 헌법을 고수하는 호헌을 발표하자 박종철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강력한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6월 항쟁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정권을 무릎 꿇린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 ●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처음 경찰은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였으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부검의

의 증언으로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수사경관 조한경과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건진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신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하였으며, 재야단체들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각계인사 9천 명으로 구성된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등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국은 고문정권규탄 및 민주화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이에 정부는 내무부 장관 김종호와 치안본부장 강민창의 전격 해임과 고문근절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을 통하여 치안감 박처원과 경정 유정방·박원택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였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폭로로 서울지검은 6명을 추가 구속하였고, 정부는 주요 인사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사건은폐조작 시도는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추모집회와 규탄대회는 개헌논의와 연결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한편,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신문계에는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일이 붐을 이루기 시작했고 지면경쟁 등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어 6공화국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언론노조의 결성과 기자들의 집단적인 활동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 언론노조 결성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4공화국 시절인 1974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결성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후 유신과 5공화국 하에서는 금기사항으로 되어있어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1974년 12월 10일 소속기자 40여명이 창립했으나 서울시청이 설립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아 노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976년 7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여 박 대통령 암살 직후인 1979년 12월 11일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승소하였다. 하지만 1980년 5·17 이후 노조 측이 재판중지 요청을 제기하여 사법적

으로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5공 치하에서는 언론노조가 부활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노조를 새로 설립하여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일보에 이어서 동아일보(11월 18일), 중앙일보(12월 1일), MBC(12월 9일), 코리아헤럴드(12월 14일) 등 서울의 언론사 노조 결성이 잇따랐다. 1988년 들어서는 지방의 신문 방송사와 서울의 나머지 언론사들이 모두 노조를 결성하여 1989년 1월까지 전국 43개 언론사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가 1만 4,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각사 노조는 1988년 4월 6일 당시까지 조직이 완료된 15개 서울과 지방의 언론사 노조들이 모여 언론사상 최초로 독자적 전국 단위기구인 전국 언론사 노동조합협의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 1988년 11월 26일 전국 41개 언론노조를 창립회원으로 하는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언론노조는 결성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언론계의 해묵은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거부운동 등 자정운동도 일어났다. 그런데 민주화로 인해 신문발행이 자율화되자 자본력의 뒷받침도 없는 신문사들이 설립되면서 사이버기자 문제가 또 다시 대두하게 됐다. 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그나마도 연체되기 일췌였다. 보급소와 지사에는 무급 확장사원들이 기자로 행세하며 언론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1989년 2월 10일 지방에서 사이버기자의 횡포가 극심하다며 '민생치안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기자사칭 갈취행위나 피해자 약점폭로 위협 갈취행위, 출판물 구독 및 광고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사이버기자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1990년 2월 정부는 이를 빌미로 프레스카드 부활과 사이버기자 신고센터 설치를 들고 나왔다. 최병열 공보처 장관은 2월 23일 서기원 신문협회장, 서영훈 방송협회장, 조두흠 신문편집인협회장, 노향기 기자협회장, 이종균 잡지협회장, 김재열 주간신문협회

부회장 등과 만나 사이버기자 문제와 관련, 언론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기원 회장은 "협회에서도 사이버기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면서 "과거의 프레스카드와 같은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회원사와 신중히 논의해 볼 생각이며 언론계에서 사이버기자에 대한 추방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타 협회들도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또다시 언론단체에 의한 '자율정화'라는 가면을 쓰고 연출되려 하고 있다"며 문공부에 프레스카드제를 부활하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결국 프레스카드 부활은 철회되고 말았다.

2. 언론 환경의 변화

1987년 6·29 선언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고 프레스카드는 언론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발행하도록 잠정 결정했으나 추후 계속된 논의를 거쳐 1987년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언론기본법을 대신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으로 신문 잡지의 발행을 자율화함에 따라 새로운 언론매체가 대량으로 등장하였다. 1960년 4·19 직후 제2공화국이 발행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했던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다.

6공화국의 출범을 전후해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자유화, 자율화의 물결을 타고 다양한 종류의 신문과 잡지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80년 언론 통폐합 때에 폐간된 신문과 잡지 등의 복간과 신규 언론기관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렇게 신문발행이 자유로워지자 서울에서 '한겨레신문' (1988. 5. 15), '세계일보' (1989. 2. 10), '국민일보' (1988. 12. 10) 등의 종합 일간지가 새로 창간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지를 비롯한 특수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언론통폐합 때에 폐간된 신문들의 복간과 신규 등록 신문의 창간 등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지방지 외에 서울의 지역과 지방의 군 단위 '지역 신문'의 창간도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1987년 6·29 선언 때에 30종이던 일간지가 1989년 12월말 68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6·29 당시 각종 정기간행물의 종수는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을 통틀어 모두 2,241종이었는데 불과 1년 6개월 동안에 1,200여 종이 늘어 1988년 12월에는 3,441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다시 1989년 1월 한 달 만에 109종이 신규로 등록해 모두 3,550종을 기록했다.

새로 나온 신문들 가운데 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국제신문, 영남일보, 충도일보 등은 1980년 언론통폐합 때에 폐간되었다가 복간형태로 다시 나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새로 창간된 것이다.

한편 홍수처럼 쏟아지던 일간지의 등록이 1991년부터는 크게 둔화하기 시작했다. 활발해진 노조활동과 함께 신문경영에 있어 우수한 기자의 확보와 처우문제 등이 어려웠고 광고모집 및 독자의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계는 전국을 동시발행시대로 묶는 중앙사의 지방분공장 설치, 기존 신문사를 통한 현지 인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21일 한국일보의 창원공장 가동으로 전국 동시인쇄시대가 열리자 조선일보는 대구의 영남일보와 인쇄계약을 체결 현지에서 신문을 인쇄하여 배포했다. 또한 광주 전남일보와 서울 경향신문은 대구 경북일보, 광주 무등일보 등과 역시 인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중앙일보는 1992년 대구성서공단에 인쇄공장을 지어 현지 인쇄를 단행했다.

한국일보는 12월 16일 조석간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경향신문 역시 조간을 발행하였다. 강원일보, 매일신문, 전북일보는 CTS화를 달성했고 중앙일보는 10월 25일 4세대 플페이지네이션 CTS시스템을 가동했다. 1991년 한 해 동안 주당 발행면수를 가장 많이 늘린 신문은 경향신문으로 주당 136면 발행체제에서 40면을 증면하여 12월에는 주당 176면을 발간했다. 세계일보도 120면에서 144면, 조선일보는 158면에서 180면, 동아일보 154면에서 168면, 중앙일보 154면에서 164면, 서울신문 126면에서 136면, 국민일보 144면에서 148면으로 각기 늘어났으며 한국일보는 168면 발행체제로 동일하였다.

지방신문은 영남일보가 104면에서 40면이 늘어난 144면으로 증면을 가장

많이 했고 이어서 매일신문이 110면에서 144면, 부산일보 124면에서 152면, 광주일보 96면에서 120면, 강원·전북일보는 72면에서 96면, 대전일보 104면에서 114면, 전남일보 96면에서 104면, 경남일보 96면에서 100면 등의 순으로 증면했다. 경기일보, 경남매일, 경북일보, 경인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충청일보 등은 주 96면 발행체제를 유지했고 대구일보, 인천일보, 전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는 72~74면으로 주간 발행면수의 변동이 없었다.

증면과 함께 1991년에는 국민·동아·세계·조선·한국·강원·경향·경북·국제·대전·매일·부산·영남·전라·전북일보 등이 본문활자를 키웠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언론과의 뉴스 등 정보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어 연합통신은 소련의 타스통신·루마니아의 롬프레스통신과 뉴스교환 협력협정을, 로이터·AFP와는 전송사진 수신협정을, 중국의 신화통신과는 중국경제 정보 수신배포협정을 각기 맺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10월 30일, 뉴스위크 한국판을 창간했으며 한국일보는 US News & World Report·Popular Science·USA Today 등과 독점전재계약을 맺었고 내외경제신문은 뉴욕타임스와 과학기사를 독점 전재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전자신문 MEET를 7월 미주에 상륙시켜 우리정보를 해외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문의 혁신은 계속 이어져 1991년 4월 경향신문의 조간화 이후 2년만인 1993년 4월 1일부터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이 석간에서 조간으로 변경, 발행됐으며 국민일보는 '정오의 신문'을 발행했다. 강제전환은 대도시 교통체증에 따른 배달의 어려움과 라이프사이클변화 등 사회변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와 매경의 강제변경에 따라 중앙종합지 9개중 7개(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한겨레)가 조간, 주요 중앙경제지 모두가 조간(내경·매경·서경·중경·한경)이 됨으로써 조간신문들 간에 판매 및 광고경쟁이 불붙게 되었다. 강제가 바뀌는 동시에 경향·동아·조선·중앙·한국·매경·한경 등은 1일 32면 발행체제로의 증면을 단행함으로써 성장이 둔화된 신문광고시장을 놓고 늘어난 지면을 소화하기 위한 신문간의 광고수주

활동은 전보다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신문협회에서는 1993년 4월 23일 제225차 이사회를 열고 발행면수 조정과 신문휴간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다. 발행면수는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감면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회원사에 권유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사실상 매일 발행하고 있는 체제를 바꾸어 신문제작자와 배달사원들의 복지를 감안, 기존의 신문 휴간일(어린이날·신문의 날 등)을 포함 월 2회 이상 휴간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사와 서울신문사는 4월 22일과 28일자 사고를 통해 5월부터 주 1회 휴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향은 매주 일요일자를, 서울은 매주 월요일자를 쉬며 신문구독료를 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문계 전체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 판매, 광고전쟁은 치열해졌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신문이 주 1회 휴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 이후 9년 만에 신문사 종사자들이 주 1회 휴무를 다시 찾게 되었던 것이다.

3. 윤리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언론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존에 수행해오고 있던 심의활동과 언론자유 수호, 국내외 언론발전을 위한 활동 전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런 와중에 1990년대 초반 무분별한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된 신문광고로 인해 서민가정이 빚 때문에 파탄을 맞는 등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윤리위는 1992년 6월 24일, 제635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매일신문,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11사의 카드대출 광고에 대해 공개경고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이외 신문사는 대부분 신용카드 대출 관련 광고를 계속 게재하였다. 이에 윤리위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자제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결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당 신문사에 발송하였다.

신용카드 변칙 대출광고 자제협조 요청

1. 사채업자들의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은 신용카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이에 관한 신문광고도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항에 의해 게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들 광고는 또한 전화번호와 일부 신빙성 없는 이율 및 대출조건만을 제시했을 뿐 그 책임소재가 불명하여 사금융시장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신용카드를 둘러싼 각종 사기사건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책임소재 불명의 광고는 각종 금융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불법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이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회적인 지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그동안 해당사에 대해 여러차례 주의 비공개경고 및 공개경고 등의 제재조치로 그 게재를 자제토록 하였으나 일부 소수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아직껏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문의 품위와 신문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그 게재를 자제토록 거듭 당부합니다.

윤리위는 1992년 11월 25일, 연합통신 11월 23일자 '스포츠신문 공대위, 신문윤리위 개편 촉구' 제하 기사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연합통신 기사는 스포츠신문 음란폭력조장 공동대책위원회(실행위원 : 손봉호 서울대 교수 등 5명)가 YMCA회관에서 대표회의를 갖고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적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도개편을 촉구하는 공한을 위원회에 발송했다는 내용이었다.

공대위는 11월 23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송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사로부터 재원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스포츠신문의 선정적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언론활동 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풍양속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를 해치는 경우 강력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신문윤리위원회의 인사, 재정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스포츠신문 3사가 내용개선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11월 들어 3사의 지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스포츠신문 불매운동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청소년이 보아도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스포츠신문 3사가 계속해서 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스포츠신문사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신문 모니터 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내년 봄에 개최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활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통신의 이러한 보도를 접한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연합통신의 보도가 윤리위 위상을 손상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신 연합통신 사장
참조 편집국장
제목 "스포츠신문공대위, 신문윤리위 개편촉구" 기사보도의 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가 92. 11. 23일자 보도한 "스포츠신문공대위, 신문윤리위 개편촉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탄생시키고 또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귀사가 어떻게 해서 신문윤리위의 제도를 그토록 이해못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사의 기사에서 「방송윤리위원회」를 「신문윤리위원회」와 비교하였으나 「방송윤리위원회」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와 비교할 성격의 기구도 아니고 「공대위」

에서 본 위원회에 "제도개편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는 내용 또한 본 위원회는 아직껏 그같은 내용의 공한을 받은 바도 없고 또 「공대위」란 임의단체에서 본 위원회에 대하여 제도를 개편하라는 당치않은 공한을 보낼 리도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귀사도 주지하다시피 일찍이 1961년 9월 12일 일간신문 및 통신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그리고 기자협회 대표들이 언론자유 수호 신장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또 신문윤리강령 및 운영의 제 제도를 마련하여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신문윤리위원회」로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올바른 언론을 위한 감시기능을 부여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오으로써 대내외의 언론기구로부터 두터운 인정을 받고 있는 언론감시자율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의 제도는 「윤리위」 스스로 개편할 수 없으며 오직 귀사 등 언론기간단체에서 개편해야 함에도 그러한 실정을 이해 못하고 한낱 「공대위」의 성명만을 토대로 일방적인 기사를, 그것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를 안은 월권적 「공대위」 성명을 한술 더 뜬 왜곡성 보도를 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앞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편달과 함께 발전적 육성에 배전의 관심 있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 윤리위는 1997년 10월 29일 열린 제693차 윤리위원회에서 국민일보, 서울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등 4개지에 대해 서약문 게재위치가 정관 제31조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제호 바로 아래 또는 제호 옆에 게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일보는 11월 15일자부터 시정하여 게재하였다.

제3절

신문윤리강령 개정과
사단법인 발족

1. 신문윤리강령 개정 배경

사이비언론의 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정부의 언론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신문윤리강령에 대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95년 4월 14일 제39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도 ‘시대상황에 맞는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신문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에서 많은 언론인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 최종로 신문협회장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신문윤리강령은 다양한 여러 의견을 수용, 이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기찬 변호사는 ‘신문윤리강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문윤리강령의 규범으로서의 문제점으로 먼저 내용의 빈약, 내용의 방어적·소극적 경향, 강령의 추상성·모호성, 표현의 구시대성을 지적하였다. 이어 실천영역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시비, 언론인 부패,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윤리강령의 대대적인 정비와 보완, 전국적·통일적 윤리강령의 제정 필요, 윤리강령의 규범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언론계 단체와 인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신문윤리강령 개정을 논의하

였으며, 특히 신문협회는 1995년 4월 28일, 부산에서 238차 이사회를 열고 1957년에 제정된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2. 강령개정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선포

신문윤리강령 개정은 신문협회가 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과 함께 법조계·학계 등과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 현시대상황에 맞게 개정을 추진했다. 1995년 6월 14일, 신문협회는 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과 3개 단체장회의를 열고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개정을 독립신문창간 100주년인 1996년 제40회 신문의 날에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윤리강령 개정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윤리덕목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며 표현을 현대화해 강령과 실천요강 등을 보다 세밀한 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령개정을 위해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는데, 각계에서 추천한 윤리강령개정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개정위원회 위원

-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 김동환(변호사)
- 김정기(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 김창구(신문윤리위 심의실장)
-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 박권상(동아일보 고문)
- 이용원(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1995년 구성된 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이후 7개월여 동안 10차례의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한 끝에 1996년 1월 16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윤리강령의 경우 전문을 수정·보완 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권리 침해방지, 매체접근의 보장 등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도와 평론의 태도’를 ‘보도와 평론의 원칙’으로, ‘품격’을 ‘언론의 품위’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실천요강의 경우에는 규제조항을 4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세부규제항목은 28개 부문에서 60개 부문으로 대폭 늘려 구체화 했다. 규제조항에서 취재준칙, 보도준칙, 사법보도준칙, 취재원 명시원칙,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출판물의 제재와 인용, 평론의 원칙, 보도금지 시한, 편집지침, 명예와 신용존중, 사생활보호, 어린이 보호,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공익의 정의 등이 신설됐다.

세부규제 항목에서는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보도기사에 기자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의한 의견 삽입 금지, 판결문 등 사법문서의 사전보도 금지, 취재원 신원 보호의무, 공인을 제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사진 촬영 금지,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칼럼의 편견 금지, 보도금지시한 규정, 관계 사진 게재원칙, 사자의 명예존중, 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유괴보도 자제, 주식 및 증권거래 금지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렇게 개정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96년 2월 16일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뒤 같은 해 4월 8일 제40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공표하였다.

3. 사단법인으로 발족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위원회의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전환, 설립하였다. 윤리위는 본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보처에 등록된 단체였으나 1994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

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8월 12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공보처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는데, 이 폐지안이 확정될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 2 제2항에 의해 공익자금 지원단체로서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에 윤리위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침 광고공사에서 법인단체로 설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곤란하다고 비공식통보를 해온 것도 사단법인 발족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리고 1996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발족, 출범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제로 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한편, 신문윤리위는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둔 1996년 2월 국회추천 윤리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1997년 4월 국회에 윤리위원 1명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자 국회는 여야 각 1명씩 2명을 추천함이 상례이며 1명 추천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윤리위에 통보해왔다.

윤리위는 사단법인 출범 직후인 1996년 5월 23일 제51차 이사회에서 일단

국회추천 윤리위원이 결원된 상태로 1년 동안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다시 거론기로 하였다. 이후 윤리위원 수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다가 1998년 4월 21일 열린 제53차 이사회에서 국회 추천 위원 수를 2인으로 환원하였다.